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주식회사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대표이사 ◈◈◈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공사대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. 〇. 〇〇.부터 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00. O. O.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중인 OO시 OO구 OO길 OO 소재 OO빌라주택(30세대)의 타일 및 미장공사를 아래와 같이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 - (1) 공사기간: 2000. 0. 00. 착공

- (2) 총 대 금 : 금 50,000,000원
- (3) 대금지급방법 : 공사가 끝나는 즉시 전액
- 2.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 ○ . ○ . 공사에 착수하여 20 ○ . ○ . 타일 및 미장공사 일체를 완료하여 주었는바, 피고가 위 공사대금 50,000,000원 중 20 ○ ○ . ○ ○ . 20,000,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30,000,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30,000,000원을 지급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는 데도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나머지 공사대금 30,000,000원 및 그에 대한 공사 완공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의, 그 다 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건설공사표준도급(하도급) 계약서

첨 부 서 류

| 1. | 위 입증방법 | 1통 |
|----|-----------|----|
| 1. | 법인등기사항증명서 | 1통 |
| 1. | 소장부본 | 1통 |
| 1. | 송달료납부서 | 1통 |

20 O O O . O O . 이 연고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| 관할법원 | ※ 아래(1)참조 | 소멸시효 | 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.** | |
|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제출부수 |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| | | |
| 비용 | 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| | | |
| 불복절차 및 기 간 | 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| | | |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